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12. 13.>

거 제 시

수신자 조홍래 귀하 (우 5294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을 동외로47번길 12)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5985844

접수일 2019. 09. 06.

청구 내용	거제시 관내 주차장 관리(위탁 수탁)에 대하여 1.전체 노상 주차장 위탁(위 수탁, 수탁)관리 계약서 2.전체 실내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를 공개 바랍니다.
-------	--

공개 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신청)공개 내역 - 거제시 관내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계약서 내용 동일하여 1부만 전체스캔, 나머지 계약서는 앞페이지만 스캔)
-------	--

공개 일시	2019. 09. 23. 16	공개 장소	
-------	------------------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 · 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 ·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0원	0원	0원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경상남도거제시장

행정서기 최진호

지방행정사무관 최무경

협조자

시행 교통행정과-60892(2019. 09. 23.)

우 53257 경남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청 계룡로 125

전화번호 055-639-4565 팩스번호 02--

/ cjinho@korea.kr

/ 공개 구분

인쇄일자 : 2020. 04. 08. 06:52:18

인쇄자 : 조홍래

210mm×297mm [백상지(80g/m²)]
2/3



(뒤 쪽)

유의 사항

1.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다.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2.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 가. 정보통신망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
나. 수입인지(정부기관) 또는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3.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면에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으로 공기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4.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어휘해석 등)

본 계약서의 어휘 해석상의 차이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은 쌍방 계약 체결하여 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한다.
② 본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2조(부가가치세의 납부)

- ① “을”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낙찰금액과는 별도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 납부 시 거제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의 분할 납기는 계약금액의 분할납기와 동일하다.

2018년 12월 26일

위 계약자 “갑” 주
성

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명 : 거제시장 (인)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고현1구역 공영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본 계약조건에 있어 거제시장을 “갑” 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 이라 하여 거제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 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관리 시키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① 위탁관리대상 주차장은 아래와 같이 한다.

주차장명	구간	주 차 장			비고
		주차면수	주차방법	급지	
고현1구역 공영노상유료주차장	거제중앙로1936~ 거제중앙로1926	16면	평행	1	

제3조(위탁관리 계약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위탁관리 계약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한다.

제5조(계약금액 납부)

① “을”은 주차장 위탁관리 계약금액을 거제시주차장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 계약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금고에 1년 단위로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250만원이상 금액은 분납이 가능하다.

* 250만원이하 선납/ 500만원이하 2회분납/ 1,000만원이하 3회분납/ 1,000만원이상 4회분납

② “을”은 주차수입과 관련하여 위탁관리 계약금 감액 요구할 수 없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을”은 거제시주차장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이용객이 필요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갑”이 지정한 주차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 시간은 차량이 주차장에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 한 시간으로 한다.
단, 주차요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징수 책임을 진다.

제7조(주차장 운영시간)

1. 주차장 운영시간은 각 항과 같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① 4월부터 10월까지 : 08:00~20:00
 - ②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 09:00~19:30
2. 법정공휴일인 명절 및 거제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관련시에는 휴무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운영권의 양도·양수금지 등)

“을”은 직영(2인이하로 공동운영가능)으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 운영하거나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질권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주차요금 및 면제·감면)

“을”이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조례 제3조 및 별표1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하여야 한다.

1. 일시적으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3. “갑”이 발급한 거제시 공영 무료주차권 소지자(1시간 이내)는 감면한다.
4. 이륜차 전용 주차면에 주차한 이륜차 및 자전거는 감면한다.

제10조(주차거부금지)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가 곤란하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 구조,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제11조(주차질서제도 의무규정)

“을”은 차량 진·출입 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주차장 이용자 가 주차면에 바르게 주차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을”은 주차장의 시설 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3회이상 경고시 계약해지 및 계약이행보증금 물수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

1. “을”은 주차장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2. “을”은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공익적 목적(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일시 폐쇄 요구 시(월 5일이하만 가능)에는 즉시 따라야 하며, 위탁관리 계약금액 감면을 요구 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주차면이 축소, 폐쇄될 경우 “갑”은 공용제한 기간 만큼 위탁관리기간을 협의 조정한다. 이 경우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일 할 정산한다.
4.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환경을 항상 정비하여야 하며, 교통질서 및 교통 소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을”은 기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 및 보수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해약 시는 그 소유권을 “갑”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6. “을”은 주차장 관리에 관한 “갑”이 실시하는 주차장 관리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이용시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대하여야 한다.
7.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모든 제세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국세·지방 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을”은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 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제세 및 공과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8. 주차권은 “갑”이 규정한 서식에 의거 “을”이 제작하여야 하고,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수불정리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갑”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9. “을”은 주차요금의 적정징수, 요금징수 시 이용객에 대한 친절봉사, 주차장 이용시간내의 관리 부주의로 차량 오·훼손 및 도난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특히 주차장 관리상 예측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0. “을”은 주차장관리 근무 중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음주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주차장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갑”의 감독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시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제복(모자, 완장)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2. “을”은 거제시주차장조례에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연도 주차장운영 수지분석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을”은 주차장 구역 내의 시설물을 분실·훼손한 경우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탁관리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행위
2. 수탁관리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관리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주차장내 장애인 전용 주차면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행위
5. 지정된 주차면 외 주차면을 증설하거나 주차면 외에 주차시킴으로써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제14조(계약해지 등)

“갑”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약 체결 후 1개월이 경과하여도 주차장 관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2. 관계법규 및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도,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이나 교통 혼잡 등 지역여건의 현저한 변화로 전면 또는 일부주차장을 폐지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와 관계법령의 개폐, 감독관청의 지시등의 사유로 대행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4. 위탁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2회 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위탁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을”의 사유로 주차장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거나 포기한 때
6. “을”이 민·형사상 문제로 수탁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7.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

는 기간 내에 위탁관리 주차장을 “갑” 의 입회하에 제2조 2항에 의한 시설물 목록을 작성 원상복구 반환하여야 한다.

8.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미준수시 “갑” 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여도 “을” 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보증금)

“을”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20/100이상의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및 수탁관리의 운영포기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당해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을” 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위탁관리 계약금액 반환)

- ① “갑” 은 위탁 기간 내에 “갑” 의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한 계약금을 다음분기 일할 정산 또는 반환한다.
- ② “갑” 은 제13조 제5호의 경우에는 선납한 위탁관리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손해배상의 책임)

- ① “을” 은 주차장위탁관리수탁자로서 업무수행과정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을”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을” 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③ 수탁시설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을” 및 제3자의 귀책사유로 “갑” 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을” 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안내간판 설치 등)

“을” 은 상호 및 안내간판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규격에 따른 위치와 형태,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의계약 및 입찰참가 제한)

제14조2항 또는 제14조8항에 의거 계약 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